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현재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반복적 조례개정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 활동비 200,000원으로 명시된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함. (안 제2조제1항)
- 안 제4조제2항에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표 3과 별표 4를 삭제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한다.

- 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u>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p>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u>별표 2와 같다.</u></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의정활동비 지급기준</u> (제2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지급 기준</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의 정 활 동 비</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의정자료수집 ·연구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 조 활 동 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원 1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9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200,000원</td> </tr> </tbody> </table> <p>[별표 2]</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u>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u> (제4조제1항 관련)</p>	지급 기준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의원 1인	월 900,000원	월 200,000원	<p>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u>① 영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한다.</u></p> <p>② ----- ----- <u>별표 1과</u> ----</p> <p>[별표 1]</p> <p>(삭 제)</p> <p>[별표 1]</p> <p>[별표 3]</p> <p>(삭 제)</p>
지급 기준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의원 1인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단위 : 원)

철도 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 임 액	자동 차 운임	현지교 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 비고 :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영동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 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등급	항공 임 액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 · 부의장	가 나 다 라	1등 정 액	35	166	107	140	170	195
			35	120	78	140	170	195
			35	92	58	140	170	195
			35	79	49	140	170	195
의 원	가 나 다 라	2등 정 액	30	145	81	130	155	180
			30	95	59	130	155	180
			30	70	44	130	155	180
			30	62	37	130	155	180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삭 제)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